1.000 노회명 및 헌법 – 본 노회는 "미국장로교회 노스웨스트 코스트 노회"라 칭한다. 본 노회 제반 운행은 미국장로교회(PCUSA)의 헌법에 준한다. [1]

2.000 목적

2.100. 사명 선언문: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노스웨스트 코스트 노회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도록 "지역적으로 흩어졌으나 연결된 회중들과 지도자들을 참여시키고 구비시키며 격려한다." [2]

2.200. 비젼 선언문: 각 회중은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한다: 활기찬 목회를 이루며; 현재 그리고 새롭게 발생하는 필요들을 충족시키고, 공유하는 선교를 위해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연결을 이루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한다.

3.000 노회원

3.100. 노스웨스트 코스트 노회는 미국장로교회 소속 치리회이다; 다음의 지역들에 있는 모든 교회들 및 말씀과 성례전을 위한 목사들의 공동체이다:

즉 아래의 워싱턴주 카운티들로서, 아담스 (팬핸들로 알려진 부분), 벤톤, 쉘란, 클러램, 더글러스, 프랭클린, 그런트, 아일랜드, 제퍼슨, 킹 (시애틀 160 가 동북 부분), 키티타스, 크릭키탓 (롹 크릭 동쪽 부분), 오카노갠, 샌 유앤, 스캐깃, 스노미쉬, 왈라 왈라, 왓캄, 야키마,[3] 사우스 프롯랜드가를 접한 피어스 부분, 동 96 가, 21 가 SW & 31 에브뉴 SW; 팬핸들 또는 서남 알라스카로 알려진 알라스카주의 부분 – 남쪽의 딕슨 입구에서부터 북쪽의 야쿠탯 지역을 포함 [4]

3.200. G-0.301 및 내규 3.600 에 규정된 대로, 노회가 모일 때에 각 교회는 당회의 위탁받은 장로(들)에 의하여 대표된다.

3.300. **교역장로**들은 G-3.0306 에 따라 등록 된 자들이다.

3.400. **사역장로 회원들** – 각 사역장로들 (해당 당회로부터 위탁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선출받은 노회장, 임원, 상임 전권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회 위원장, 집행 위원회 (중앙협의회?) (Executive Board) 위원, 또는 총무스탭(executive staff)은 그의 임기동안 노회원으로 등록 된다 (**G-3.0306)**.

3.500. 노회에 의해 **특정한 목회봉사에 위임받은 사역장로들**은 (노회가 위임한 목회사역장로들은) 선출된 임기 동안 노회원으로 등록 될수 있으며 균형을 위해 사역장로 총대(commissioner)로 간주 한다. [5]

3.600 균형을 위한 목적으로 (G-3.0301), 투표자격을 가진 사역장로들의 수는 투표자격을 가진 교역장로들 (명예 은퇴 교역장로로서 지난 두해 동안 최소 한번 정규 노회 모임에 참석한 자들을 포함)의 수와 동등하거나 많아야 한다. 불균형이 생기면, 총회 연례 통계보고가 끝난 직후 정기노회에서 연례적인 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4.000 임원들 (Officers)

4.100. 노회의 임원들은 노회장(Moderator), 부노회장, 집행 위원회 (EB) 위원장, 정서기 및 회계이다. [6] 위의 임원들은 내규, 헌법, 로버트 회의 진행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임원의 임기는 1 월 1 일에 시작하고 해당된 년도 12 월 31 일에 마치거나 그들의 후계자들이 선출될 때 까지로 한다. [7]

4.200 노회장 – 노회장은 일년을 임기로 하고 연례 회의에서 선출 받거나 혹은 후임자가 선출받을 때 까지 수행한다. 동인이 연속 추가 두 임기를 넘게 선출 받을 수 없다. 선거 당시 노회장은 노회원이거나 노회의 전권위원회(Commission) 위원이어야 한다. 자리가 비게될 경우 부노회장이 남은 임기 동안 직책을 맡는다. 노회장은 노회의 공천위원회를 제외한 전권위원회들(Commissions)과 위원회들(Committees)의 당연직 회원 (ex-officio)이 된다. [8]

4.300 부노회장 – 부노회장은 연례 회의에서 1 년을 임기로 선출 되며 선출받은 후 1 월 1 일부터 시작하여 1 년 혹은 후임이 선출될 때까지 수행하고, 연속 추가 임기 두번을 넘지않게 선출 받을 수 있다. 선출 당시 부노회장은 본 노회원이거나 총대(Commissioner)이어야 한다. (G-3.0104) 부노회장은 노회장의 청탁에 따라, 그의 부재시 또는 그가 시무 불능할 때 노회장의 직책들을 수행 한다. 부노회장은 통상적으로 노회장의 임기가 끝날때에 노회장으로 공천받는다. [9]

4.400 동사 노회장 – 노회장과 부노회장이 동등하게 직책을 수행하도록 동사 노회장을 1 년 임기로 선출할 수 있다. 만약에 그중 한 동사노회장이 봉사할 수 없게 될 경우 다른 동사노회장이 노회장이 되며, 동사노회장이나 부노회장은 그 다음 정기회 혹은 그 목적을 위한 회의에서 선출될 수 있다. [10]

4.500 집행 위원회 (Executive Board) 위원장 – 4.400 집행 위원회는 연도의 첫번째 회의에서 1 년 임기로, 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위원장을 위원들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공석이 되면, 위원회는 본 위원들 중에서 그전 위원장의 임무를 완수하도록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11]

4.600 회계 - 회계는 그의 임기 마지막 회의에서 3 년을 임기로 선출받고 선거후 1 월 1 일부터그 직책들을 수행한다. 12

4.700 정서기– 정서기는 1 월 1 일에 시작하여 12 월 31 일에 마치는 3 년 임기로 선출된다. 선거는 임기 마지막 정기회의에서 시행된다. 연속 무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연례 성과 검토가 임원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a. 정서기에 대한 공천은 공천위원회(Nominating Committee)가 한다. 13

b. 노회 정서기는 노회의 법학자로 봉사하며, 헌법, 본 내규 및 노회가 지시하는 기타 의무에 규정된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

5.000 총무 스탭 (Executive Staff)

5.100 노회는 그 사명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노회 결정을 수행하며, 선교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조달의 임무를 집행 위원회를 통해수행하도록 노회 총무(들)를 선출할 수 있다. [G-3.0110]

5.200 총무 스탭 공천은 노회에서 선출된 총무공천위원회가 한다.

5.300 총무 스탭은 노회의 전권위원회들과 위원회들 및 노회의 기관들의 비투표 자격 당연직 회원(들)(ex-officio member(s))이 된다.

6.000 회의

6.100 정기노회는 G-3.0105 에 따라 거행되며, 또한 법인체의 회의들로도 간주 된다. 그중의 한 회의는 선거가 있는 연례회의로 정한다. 정기 회의의 장소들, 날짜들, 시간들 및 매체들은 정서기에 의해서 제안되고 집행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된다. 언제든 가능하고 실질적이며 적절하면, 전자적 수단에 의한 참석이 허락되어야 한다. 당일 회의 일정은 모든 회의 문서와 함께 배포한다. 내용적요와 노회와 집행위원회의 회의록들은 각 투표회원과 회중에게 정기회의 10 일 전에 배포되어야 한다. 15

6.101 임시 회의들– 임시회의들은 6 명의 장로들의 문서 청원으로 소집되며, 그 수의 반은 사역 장로들이고 다른 반은 교역 장로로서, 사역장로들은 최소한 3 교회를 대표하여야 한다. 16 노회의 집행위원회 역시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회의 통지는 최소한 10 일 전에 각 교역 장로와 모든 당회에 발송되어야 한다. 통지는 회의들의 목적을 명시하고 통지에 열거되지 않은 다른 업무들은 다룰 수 없다. 17

6.102 - 정족수 -정족수는 G-3.304 에 따라 세 다른 회중들로 부터 3 교역장로들과 3 사역장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6.103 - 현장 공천은 공천 종료전에 노회에서 선출하는 모든 직책이나 직분에 허락되어야 한다.

7.000 조직체 및 체제 - 노회의 체제는 아래와 같다:

a. **집행 위원회(Executive Board)** - G-3.0109 에 따라 설립된 집행위원회는 노회의 사역을 감독하고, 노회의 체제가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기능적으로 적합한지 정규적으로 검토한다. 노회는 헌법 G-3.0301 에서 규정된 대로, 노회회기 사이 (노회가 모이지 않는 기간) 에 노회의 사명(2.100)과 비젼(2.200) 그리고 책임을 완수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회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부여할 수 있다.

b. **집행 위원회가 수립한 기관들** (위원회들, 구릅들 그리고 테스크포스들)이 집행하는 사역

c. **헌법 G-3.019 가 허락하거나 제공하는 상임 위원회들과 전권위원회들:**

i. 목회 전권위원회 (COM)
ii. 목회준비 전권위원회 (CPM)
iii. 공천 위원회 (NOM)
iv. 사법 전권위원회 (PJC)
vi. 노회가 설립한 행정 전권위원회들

d. 노회의 단체, 보드, 전권위원회, 단위, 부서, 위원회 태스크포스 및 노회가 승인한 모든 단체의 구성원이 연속 두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그러한 결석이 이유없는 경우, 그의 회원권은 자동으로 박탈되고 정서기는 그에게 통보한다. 각 단체의 위원장은 결석을 정서기에게 통보하고, 이유없이 결석한 그를 공천한 공천 위원회 혹은 공천, 선출, 임명을 한 단체에 통보하여 원래 부재석에 그를 채웠던 같은 방식으로 채워져야 한다. [18]

8.000 노회 집행위원회 (중앙협의회?)

8.100 집행위원회는 헌법이 노회의 위원회와 전권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외의 **노회의 업무를 조정, 계획 시행 및 촉진해야 한다**. 회의들 사이의 노회의 업무를 총괄 감독하고, 노회에 추천하며, 본 내규에 명시된 기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본 위원회는 노회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a. 모든 결정들은 다음 노회 정기회의에 보고되어야 한다.
b. 집행위원회의 어떤 결정안들도 노회가 내린 결정들과 모순이어서는 않된다.
c. 집행위원회의 결정 표준은 노회의 사명과 비젼 성명서에 근거해야 한다.

8.200 집행위원회는 워싱턴주 비영리법인법, RCW 24.03 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이사회 역할을 한다.** 이 법의 목적을 위해 법인의 사무는 이사회(a board of directors)에 의해 관리된다 [RCW 24.03.095].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인 회장이 되고, 노회 부회장은 법인 부회장, 정서기는 서기와 등록 대리인이 되며, 노회 회계가 회계가 되고, 집행위원회의 나머지 구성원은 법인 이사가 된다.

8.300 구성 – 집행위원회는 노회 부회장, 현 노회장, 노회장으로 봉사한지 3 년 미만인 직전 노회장과 노회에서 선출한 알라스카와 워싱턴주의 9 명 이상의 남녀로 구성한다. 위원들은 노회 정회원 교역 장로들과 사역 장로들이여야 하며, 할수 있는한 교역장로와 사역장로의 수가 동일하도록 한다. F.1-0403 에 명시된 다양성의 일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집행위원회의 서기로 봉사할 정서기, 총무스탭 및 회계는 봉사기간 동안 투표자격이 없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8.400 봉사기간은 3 년이며, 회원들은 3 개의 동등한 년조로 나뉘며 그 중 한조는 매년 마지막 정기노회에서 선출된다. 임기는 선거 다음해 1 월 1 일부터 시작한다. 어떤 위원도 연속 6 년을 넘는 기간 동안 시무할 수 없다. 총 6 년 봉사한 위원은 최소 1 년 동안 재선될 수 없다.

8.500 회의들 - 집행위원회는 정규 노회 회의 이전에 소집 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위원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2 인의 위원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 위원장의 부재 또는 수행 무력일 경우, 정서기는 3 명의 회원의 서면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3 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19] 정족수는 투표 회원의 과반수이다.

8.600 책임들 –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책임과 권력을 가진다:

a. 총회 내 다른 공의회들과 보드들과 기관들, 그리고 에큐메니컬 조직체들과 관계한다 – 본 위원회는 노회 외부 다른 단체들과 관계할 때 본 노회를 대표하여 행동한다. 본 위원회는 미국장로교회공의회 위원회, 전권위원회 및 테스크포스 총대들 외에도 노회 대표자들을 임명한다;

b. 아래 사항을 포함한 노회의 재정과 법인 업무들을 관리한다

i. 회계년도가 시작하기에 앞서 포괄적인 연례 예산을 노회에 제안한다,

ii.노회가 통과한 예산의 수정들과 예외들을 승인한다

iii.노회의 계정, 준비금, 보유, 투자, 보험, 노회의 법적 문제를 관리; 그리고 노회의 다른 모든 관련 기업 및 금융 사업을 관리한다;

iv.노회에 모든 연례 재정 및 법인체에 관한 것들(corporate matters)을 제공한다

v. 알라스카 선교 기금과 알라스카 선교를 위한 엔다우먼트 관리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며, 이 위원회는 합병 전 양 노회들에서 선출되고 알라스카 주민이 다수가 되는 5 명 이상의

교역 장로와 사역 장로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최대 $ 5,000 의 그랜트를 승인하고 $ 5,000 이 넘을 때는 집행위원회에 추천한다.

c. 아래를 포함하는 프로그램과 책임들에 대한 운영을 한다

i. 평등 고용 기회, 공정한 고용 관행, 인사 정책, 상과 및 보상의 적절성에 대한 연례 검토를 고려하여 스탭들, 컨설턴트들 및 계약자들을 고용한다;

ii. G-9.0405 와 G-3.0106 에서 요구하는 행정 운영 매뉴얼 개발 및 유지한다

iii.필요에 따라 내규들을 검토한다

d. 다음과 같이 노회와 직접적 관계성을 제공하고 촉진하며 지시한다

i. 노회의 회중들과 회원들과 단체들내에서 그리고 그들간의, 통신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유지한다;

ii. 노회장, 노회 부회장, 정서기 및 총무가 제안한 노회의 의제를 확정한다

e. 내규의, 특히 2.000 조항의, 성서와 헌법을 바탕한 원칙에 따라 노회원들, 총대들 또는 교회들이 표현한 필요와 관심들에 응답하여 노회에 공통된 새로운 선교를 격려, 조정, 자원 및 자금 조달을 한다.

f. 노회의 선거를 위해 후보자들을 공천위원회에 공천한다.

g. 노회가 선출한 총회 및 대회 총대 또는 교체총대가 봉사할 수 없게 되고, 통지해야 할 기간 내에 예정된 정기 회의가 없을 때 새로운 총대들과 교체총대들을 명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다음 노회 정기 회의에 보고 되어야 한다.

h. 업무에 필요한 기관들을 설립하고 감독한다. 집행위원회가 수립한 위원회들은 최소한 한 명의 집행위원회 위원을 포함해야 한다.

i. 헌법의 G-3.0103 에 의해 확립된 포용성과 대표성 원칙을 노회가 구현하도록 하는 방안, 절차와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일년에 한차례 이상 교역 장로, 사역장로, 남성, 여성 및 소수민족 수를 노회에 보고한다. 노회에 보고하기 전에 공천위원회에 보고한다. [20]

j. 노회가 모이지 않은 기간 동안에, 행정위원회를 임명하고, 부재석을 채우거나 추가 회원들을 현재의 행정위원회 및 노회의 위원회 (7.000c)에 추가하고 다음 노회에서 검토받고 확인 받는다. [21]

9.000 상임 전권위원회들 및 위원회들 [22]

9.100 회원, 보고, 정족수

a. 전권위원회 (Commission) 위원들은교역장로들과 개교회의 사역장로들이어야 한다; 위원회 (Committee) 위원들은 교역장로들 혹은 개교회의 교인들이어야 한다.[23] 전권위원회들 및 위원회들은 그 년도의 마지막 정기 회의에서 선거직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삼년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들은 동등한 세 년조들로 나뉘어야 하며 그중 한 년조는 연례적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어떤 위원도 전년조이든 부분 년조이든 연속 6년을 넘는 기간 동안 봉사할 수 없다. 총 육년을 봉사한 위원은 최소한 일년은 재선 자격이 없다. 공천위원회는 자신들을 제외한 노회의 상임 전권위원회 및 위원회 후보자들을 공천한다. 상임 전권위원회들과 위원회들은 알라스카와 워싱턴 양쪽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b. 상임 전권위원회들 및 위원회들은 서면으로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c. 정족수는 투표 위원들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9.200 목회전권위원회 (COM)

a. 목회전권위원회는 가능한 한 동수의 사역장로들과 교역장로들로 구성되어야하며 F-1.0403 에 따른 다양성 가운데 일치의 원칙들을 유념하여야 한다.

b. 목회 전권위원회는 G-3.0307 에서 묘사한 대로, 후보생들과 후보자들을 감독하는 것 외에, 교역 장로들과 회중들의 “목사, 상담자 및 자문인”으로 노회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위임받은 권한으로 행하여진 모든 결정들은 다음 정기노회 때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래의 특정한 임무들이 본 전권위원회에 위임되었다:

i. 교회들의 교역자 청빙 및 해소들(order calls)을 알아낸다.
ii. 교역장로들의 시무에 대한 요청을 승인하고 발표한다.
iii. 회중과 목사가 동의하는 경우 목회 관계를 해소한다,
iv. 노회의 관할권 안에서나 혹은 바깥에서의 사역을 허락한다,
v. 교역 장로들을 다른 노회들로 이명한다,
vi. 다른 노회들에서 이전하는 교역 장로들의 심사하고 승인, 이를 그 다음 노회 정기모임에 보고한다.
vii. 설교자가 없거나 임시 목회자가 있는 당회에 당회장을 임명한다.
viii. 목사위임을 위한 전권행정위원회를 임명한다.
ix. 목사나 부목사의 요청에 의해 혹은 회중의 결정에 따른 교회의 요청에 의해 목사나 부목사의 청빙조건에 변경이 있을 때에 노회를 대표하여 승인한다
x. 교역장로의 교회 관할권 밖 사역을 “인정된 목회(validated ministry)”로 허락한다 (G-2.0503),

xi. 교역장로를 명예 은퇴 목사로 지정한다 (G-2.0503c).

xii. 교역장로의 신청에 따라 그의 직제사역 해제를 승인한다 (G-2.0507).

xiii. 이전에 G-2.0407 에 따라 직제사역이 해제된 교역장로의 복원을 승인한다.

xiv. 노회가 성례전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때 특정한 사역장로들이 성찬식을 집행하고 사회하도록 훈련하여 그 권한을 부여 및 위임한다. [24]

xv. 선교를 위한 노회의 전략적 필요가 있을 때 사역장로를 노회의 인정된 목회를 수행하기위해 제한적 목회를 승인하며, G-2.10 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들 - 즉 훈련, 심사, 감독 및 노회가 "정당하고 충분한 요건이 있을 시 위임을 철회하는 것들" - 을 포함한다. [25]"

9.300 목회준비전권위원회 (CPM)

a. 본 전권위원회는 가능한 동수의 사역장로들과 교역장로들로 구성하여야 하며 F-1.0403 의 다양성안의 일치의 원칙들을 유념하여야 한다.

b. 본 전권위원회는 노회를 대신하여 후보생들과 후보자들을 감독하면서 교역장로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지도, 육성 및 감독하는 메커니즘과 절차를 개발하고 유지해야 한다 (G-3.307).

c. 본 전권위원회에는 아래의 특정한 임무들을 위임받았다 [26]**:**

i. 후보생들을 등록시킨다

ii.후보생 과정 및 후보자 과정의 단계를 결정한다,

iii. 후보생들이나 후보자들이 교회에서 감독하는 봉사의 특정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iv. 이 전에 사역장로로 안수받은 후보생들이나 후보자들에게 당회가 허락할 경우 성찬식을 집행할수 있도록 승인한다;

v. 청빙 대기 중인 안수 심사 준비가 된 후보자를 인증(certify)한다;

vi.후보자가 자신의 사역을 위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G-2.0607)

d. 본 전권위원회는 노회 협력 위원회에 목사고시 시험관들(readers)을 임명하여야 한다.

9.500 공천위원회 (NOM) – 공천위원회는 교역장로, 사역장로, 남자, 여자, 다민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7] 이 위원회는 모든 직분들이 채워지도록 위원들을 공천하여야 하며, 공천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들, 공의회들, 전권위원회들, 각 위원장들 그리고 노회 선거를 필요로 하는 모든 치리 기관들의 공석을 채울 사람을 공천해야 한다.
공천위원회는 집행위원회가 그 소속 위원회 위원 공천을 요청할 때 F-1.0403 에 따른 다양성의 일치의 원칙에 준하여 위원들을 지명할 수 있다.

10.000 징계 절차

10.100 사법전권위원회 (PJC) – 이 전권위원회는 G-3.0109 과 D-5.000 에 따라 선출되어야 하며 규례서에 명시된 대로 그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10.200 조사위원회 - D-10.0201b 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요청될 경우 그 위원들과 위원장은 총무스탭들, 정서기, 노회장 및 부노회장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임명하며, 임원회 정족수는 세명이다. 정서기는 조사위원회의 권한, 과정 및 책임에 대하여 지도해줄 책임이 있다.

11.000 대회에 보내는 총대들

대회의 교역장로와 사역장로 총대들은 공천 위원회에서 공천하고 대회의 내규에 따라 2 년 교체 임기로 노회의 마지막 연례 정기회의에서 노회에 의해 선출된다. [28]

12.000 ***본 항목은 삭제 되었으며 2014 년 5 월 15 일자 운영매뉴얼 (Manual of Operations) 로 이동되었다.***

13.000 ***본 항목은 삭제되었으며 2014 년 5 월 15 일자운영매뉴얼(Manual of Operations) 로 이동되었다.***

14.000 – ***본항목은 2014 년 3 월 15 일자 개헌으로인해 삭제되었다.***

15.000 개헌 – 내규는 어느 노회 정기모임에서든 2/3 의 투표로 개헌할 수 있으며, 최소한 회의가 있기 십일전에 서면으로든지 아니면 전자 방편으로 제안하는 개헌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에 제안하는 정확한 변경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9]

상설규칙

상설규칙은 (1) 의회 절차보다는 사회 행정의 세부 사항과 관련되며(2) 사회의 일반적인 행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채택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규칙이다. 그러한 규칙의 예로는 회의 시작 시간을 설정하거나 손님 등록 유지와 관련된 규칙을 들 수 있다. 상설 규칙은 일반적으로 사회가 조질될 때 채택되지 않고 필요할 때 개별적으로 채택된다. 특별 주문 규칙과 마찬가지로 상설 규칙은 내규가 포함된 소책자의 별도 제목으로 인쇄될 수 있다. 상임 규칙은 사전 통지 없이 모든 비즈니스 회의에서 과반수 투표로 채택될 수 있다. 그러한 규칙은 철회되거나 수정될 때까지 유효하지만 과반수가 특정 세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를 원하는 경우 향후 세션을 구속하지 않는다." RONR 11th Ed. p. 18

회의록 승인 – 정서기는 회의록 초안을 작성하여 노회의 경우 계속 회원과 교회에, 집행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회원들에게 배포하여 검토하고 추가, 수정 또는 삭제를 제안할 것이다. 배포 10일 후 제안 사항을 검토한 후 노회장, 부노회장 및 직전 의장이 회의록을 승인할 수 있다. 2019년 10월 25일에 채택됨.

번역 안내

전권위원회 – Commission을 번역한 것이며, "전권위원회는 공의회/노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안을 숙고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임무를 부여한 공의회는 그 전권위원회에 부여되는 권한의 범위와 권한의 제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G-3.0109).
위원회 – Committee를 번역한 것이며, "위원회는 연구하고 시행방안을 제시하거나, 공의회에서 이미 결정한 사항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 위원회는 그것을 조직한 공의회에 정식 보고를 해야 하고, 위원회의 제안들은 공의회 결의를 요구한다." (G-3.0109)
집행위원회 – Executive Board를 번역한 것이며 그 임무의 성격과 가장 가깝게 여겨진 것에 기하여 번역하였다. 본 위원회는 전권위원회(Commission)의 권한을 포함한다.
영어본문에 준함 – 독자가 뜻이 분명치 않다고 판단될 때는 언제나 영어 본문에 준한다. 본문 링크:
Bylaw English Version

주석이 달린 수정 사항 (Annotated Amendments)

1. 9-14-2011: Revised nomenclature to conform to the new PCUSA Form of Government.
2. 11-4-2016: Revised mission statement in light of merger with former Central Washington Presbytery.
3. 6-25-2016: List of Washington Counties revised when the merger between the former Central Washington Presbytery and the Presbytery of the Northwest Coast was approved by the 222nd General Assembly.
4. 5-26-2014: Revised several sections to incorporate the former Presbytery of Alaska in terms of territory, meeting requirements, and representation on the Executive Board, Committees and Commissions.
5. 7-7-2013: Was not permitted by the New Form of Government (2011); restored by BoO amendment July 7, 2013; paragraph revised to conform.
6. 10-20-2017: Clarified Presbytery and Board Moderators and Presbytery Vice Moderator.
7. 2-11-2016: To allow for continuation of office if an election does not occur
8. 10-20-2017: To allow the Presbytery Moderator to serve up to three continuous one year terms if reelected by the presbytery.
9. 10-20-2017: Revised "Moderator Elect" to "Presbytery Vice Moderator." Nomenclature was revised accordingly elsewhere.
10. 10-08-2021: To allow for Presbytery Co-Moderators.
11. 2-11-2016: To allow the Board to elect its own moderator.
12. 10-16-2015: Eliminated term limits for Treasurer.
13. 2-11-2016: Eliminated separate Stated Clerk nominating committee to conform to current practice.
14. 10-08-2021: Removed commute time requirement for electronic attendance.
15. 10-16-2015: Number of meetings per year revised.

16. 10-8-2021: Restored simpler process for calling a special meeting.
17. 11-18-2011: Changed requirements for calling a special meeting.
18. 2-11-2016: Added from Standing Rules of General Assembly to prevent lack of a quorum.
19. 2-11-2016: Provides for calling of a special meeting if Moderator cannot.
20. 11-18-2011: Added this paragraph
21. 2-23-2017: Added subsection j.
22. 11-18-2011: 9.200 Committee on Representation was deleted and responsibility for inclusiveness and representation was assigned to the Executive Board.
23. 2-11-2021: Allow church members who are not elders to serve on standing committees.
24. 3-15-2014: Paragraph added.
25. 10-16-2015: COM authorized to commission CRE's.
26. 10-16-2015: CPM authorized to fully administrate preparation for ministry process.
27. 2-25-2012: Revised composition from "one third lay men, one third lay women, one third ministers."
28. 3-15-2014: Synod Commissioners revised to conform to the Synod bylaws.
29. 2-11-16: Revised amendment process.